

전주지방법원 2021. 5. 12 선고 2020가단2306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중 별지 도면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9㎡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대 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토지 위에 주택 및 헛간 등(현재 미등기 상태임)을 신축하였는데, 그 중 도면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9㎡ 헛간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(가) 부분 9㎡ 헛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선대 때부터 40년 이상 위 (가)의 헛간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F 대지(원고는 최근에 F 토지를 매수함)와의 경계로 알고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헛간의 상태도 아직 양호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보건대,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성실

도 면 표 시

토지소재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

4

현 통 표 시					
지번	지목	부호	연결번호	연적(㎡)	비고
	대	(가)	1,2,3,4,5,1,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	0	